

제414회 임시회  
'24. 1. 24.(수)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4년 1월 15일

○ 회부일자 : 2024년 1월 16일

3. 제안사유

- 현재 충청북도 소속 위원회 중에서 안전 처리 등 운영 실적이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여 운영하도록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도모

4. 주요내용

-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충청북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에 위원회를 구성(위원 임명·위촉)하고, 안전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회가 자동으로 해산(위원 해임·해촉)된 것으로 간주

## 5. 검토의견

### 가. 제출배경

- 정부는 각 부처와 지자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운영실태를 재검토하고 통·폐합 하는 등 정비하는 것을 국정과제 (120대 국정과제, 13.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로 삼고 있으며, 이에 행정안전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
- 충청북도는 181개 상설위원회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 및 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부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위원회, 단순 자문 성격의 위원회 등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 측면에서 본 조례 일괄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나. 주요내용 검토

- 제1조(「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의 개정)
  -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제9조에 도지사는 뷰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뷰티산업진흥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뷰티산업진흥위원회는 최근 3년간 2회 서면으로 개최되었고, 뷰티산업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문하는 형태로 부정기적으로 개최되었음.

- 이에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여도 위원회의 역할·기능 및 운영 상에 문제가 없고 필요한 경우에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자문을 받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

○ 제2조(「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시·도지사 및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르면,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보상 또는 포상이 필요한 경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임명 추천이 필요한 경우 심의하는 것이 주요 기능임.
-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보상 또는 포상은 부정기적으로 필요 시 실시되고 있고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위원회를 상설 운영할 필요성이 적어 안전이 발생할 때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

○ 제3조(「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는 충청북도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 등의 해당 여부와 보상 금액 등의 심의를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음.
- 본 위원회는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어 위원회를 상설 운영

하는 것보다 안전이 발생할 때 구성·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

○ 제4조(「충청북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 「도로명주소법」 제29조는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주소정보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충청북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4조는 충청북도주소정보위원회의 기능을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로 규정하고 있음.
- 지자체에서는 도로(국도, 지방도)가 새로 만들어지면 도로명을 부여하는데 시·군 내에 있는 도로는 시·군에서 부여를 하고, 두 개 이상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가 새로 만들어진 경우 도에서 도로명을 부여하게 됨.
- 충청북도에서는 최근 3년간 두 개 이상 시·군에 걸친 도로가 새로 만들어진 경우가 없어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상황으로, 위원회를 상설 운영하는 것보다 안전이 발생할 때 구성·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

○ 제5조(「충청북도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의 개정)

- 「청소년기본법」 제11조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둘 것과 위원회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충청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는 최근 3년간 2회 개최되었고,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과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 자문하는 형태로 부정기적으로 개최되었음.
- 이에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여도 위원회의 역할·기능 및 운영상에 문제가 없고 필요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자문을 받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

#### 다. 종합 검토의견

-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등 5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관련 법 및 위원회의 역할·기능 등에 따라 설치의 필요성은 있음.
- 그러나 심의 안건이 부정기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않고 개최가 되더라도 단순 자문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심의할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
- 또한, 입법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별 조례를 각각 개정하기보다 해당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참고**

**일괄개정 대상 5개 위원회 운영 현황**

(단위 : 명, 회)

연번	위원회명 (담당부서명)	위원수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실적		
			'21년	'22년	'23년
1	뷰티산업진흥위원회 (첨단바이오과)	20	1 (서면)	1 (서면)	-
2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대응총괄과)	7	1 (출석)	-	2 (출석)
3	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 (정책기획관)	5	-	-	-
4	주소정보위원회 (토지정보과)	13	-	-	-
5	청소년육성위원회 (양성평등가족정책담당관)	11	-	1 (출석)	1 (출석)